

## 이천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00. 5.  
제출자 : 이천시장

### □ 제안이유

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,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이를 제정하려는 것임

### □ 주요골자

- 가.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적용범위와 대상사무의 기준등에 관하여 정함(안 제3조, 제4조).
- 나.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은 수탁기관의 재정부담능력, 시설·장비, 기술보유정도, 책임능력과 공신력, 수탁사무처리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모집하여 선정하고, 그 선정심의를 위하여 이천시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함(안 제5조, 제6조, 제7조).
- 다.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자의 의무·위탁내용·위탁기간·예산지원에 관한 사항·협약내용을 위반한 때의 의무이행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공증하도록 함(안 제9조).
- 라.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수탁기관을 경유 시장이 재결하도록 하는 이의신청제도에 관한 규정을 정함(안 제12조).

이천시조례 제 호

## 이천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안

**제1조 (목적)**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,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① “민간위탁”이라 함은 각종 법령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- ② “수탁기관”이라 함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.

**제3조 (적용범위)**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**제4조 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)**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사실 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 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④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

**제5조 (수탁기관의 선정)** ① 시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재정부담능력, 시설·장비·기술보유정도, 책임능력과 공신력, 수탁사무처리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

## (제39회 - 1차 자치행정위원회)

야 한다.

- ② 수탁기관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려하지 아니하다.
- ③ 시장이 공개모집하는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(이하 "신청인"이라 한다)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등 선정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제6조 (심의위원회) ①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이천시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 ~ 7인이내의 위원으로 하되, 위원장·부위원장 및 위원은 관계공무원 또는 당해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고, 심의가 끝난 후에 위원회는 자동 해산된 것으로 본다.
- ③ 위원회는 신청인의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현장을 확인하며,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-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⑤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이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7조 (수탁사무의 처리)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제8조 (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)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,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.

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.

제9조 (협약체결등)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협약내용은 공증하여야 한다.

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·위탁내용·위탁기간·예산지원에 관한 사항·협약내용을 위반한 때의 의무이행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제10조 (지휘·감독) ① 시장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·감독하고,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**제11조 (사무편람)**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·처리기간·처리과정·처리기준·구비서류·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**제12조 (이의신청)** ①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,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
②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서에 변명서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10일이내에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은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재결을 하고,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**제13조 (처리상황의 감사)**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.

**제14조 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# 부            칙

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전에 체결된 민간위탁협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.